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438

2020년 4월 23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4월 3일, 서울시장

나. 회부일자 : 2020년 4월 8일

다. 상정일자 : 제293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3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20년 4월 23일 상정,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의 기술전문성 향상과 경영혁신을 위해 위탁운영하던 서남·탄천 물재생센터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단인 서울물재생시설공단으로 전환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가.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하 “공단”)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 위치는 정관으로 정하고, 자본금은 서울특별시(이하 “시”)가 전액 현물 또는 현금으로 출자함(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나. 임·직원의 임면, 이사회, 복무, 임원추천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1)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에 규정함(안 제7조)

2) 임원의 임기는 3년이며,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함(안 제7조)

3)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함(안 제8조)

4)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2미만으로 하고, 비상임이사는 공단의 업무감독을 담당하는 시의 실·본부·국장과 세무 또는 회계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9조)

5)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고,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함(안 제10조)

6)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따라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둠(안 제11조)

7) 상임임원 및 직원은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상임위원은 시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안 제12조)

8) 공단의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의 의장, 경비의 지급, 의사록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9) 그 밖에 임원의 대표권 제한, 임·직원의 비밀누설 금지, 임원의 이사회 참여 제한, 직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다. 공단의 자체사업 및 대행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1) 공단은 설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본금의 범위에서 자체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안 제18조)

2) 공단은 시장 승인을 얻어 위탁계약을 맺고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한 사업을 대행할 수 있음(안 제20조)

라. 재무회계 기준을 규정함.

1) 공단은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 회계연도를 따르고,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함(안 제20조 및 제21조)

2) 공단의 예산은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고,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하며, 예산 성립 및 변경시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안 제22조)

3) 결산은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고, 결산서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23조)

4) 공단의 잉여금 처리 절차를 정하되, 잉여금으로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을 경유하여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24조)

5)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고, 일시차입의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되, 한도액을 예산으로 정하고, 차입한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도록 함(안 제26조)

마. 공단에 대한 시장의 관리·감독 사항을 규정함.

1) 시장은 공단의 사무를 감독하고, 시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시장은 공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고 공단에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음(안 제27조 및 제28조)

2) 이사장은 상·하반기 각 1회씩 공단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결산서·재무제표·연도별 경영목표 및 실적, 평가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함(안 제30조)

바. 이 조례는 공단의 설립등기일부터 시행하고, 공단의 설립등기까지 필요한 경비는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지출하며, 최초로 구성되는 임원추천위원회는 시에 두도록 함(안 부칙 제1조부터 제3조까지)

3. 검토보고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 개요

○ 본 제정안은 서울시 하수처리시설(이하 “물재생센터”라 한다)의 기술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경영 효율성의 확보 및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해 현재 민간위탁 중인 서남 및 탄천 물재생센터 2개소를 통합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6조[1]에 따라 지방공단인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전환하고자 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조례안 구성 체계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단을 설립할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2항[2]에 따라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서울시는 이에 따라 본 제정안을 크게 총칙, 임원 및 직원, 사업, 재무회계, 감독, 보칙으로 구성하였는데, 이는 선행 사례로 1983

---

1) 「지방공기업법」 제76조(설립·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1항, 제56조제1항 및 제3항,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6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4까지, 제72조 및 제73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설립)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년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서울시설공단조례”라 한다)」와 비교해보았을 때 그 구성과 내용이 대동소이함.(〔표 1〕 참조)

○ 다만, 본 제정안은 「서울시설공단조례」와는 달리 과태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지방공기업법」 제82조제2항[3]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명시되어 있고 별도의 위임 규정이 없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물재생센터 운영실태 및 그에 따른 조례안 취지

○ 서울시는 관내 25개 자치구 외에 경기도 관내 의정부시, 고양시, 과천시, 하남시, 광명시 등 5개시 일부 구역에 대한 하수(498만㎥/일) 및 분뇨(12,500㎘/일) 처리를 위해 중랑, 난지, 탄천, 서남 등 물재생센터 4개소를 운영 중에 있음.

[표 2] 서울시 4개 물재생센터 개요 (2019년 4월 기준)

구 분		계	중 랑	난 지	탄 천 (민간위탁)	서 남 (민간위탁)
위 치		4개소	성동구 자동차시장 3길 6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덕로 426	강남구 개포로 625	강서구 양천로 201
면 적		2,801천㎡	754천㎡	937천㎡	375천㎡	735천㎡
하수	시설용량 (만㎥/일)	498	159	86	90	163
	처 리 량 (만㎥/일)	426	130	59	77	160
분뇨 등	시설용량 (kl/일)	12,500	4,000	4,500	-	4,000
	처리량 (kl/일)	11,767	4,249	3,377	-	4,141
정원/현원		546/534	139/129	107/105	125(민간위탁)	175(민간위탁)
2019 예산액		3,730억원	1,214억원	741억원	711억원	1,063억원
기 타		-	2009.1.1부분위탁	2009.1.1부분위탁	2000.4.1위탁	2001.8.1위탁

3) 「지방공기업법」 제82조(과태료)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제73조제2항(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이 중 중랑 및 난지 물재생센터는 직영(일부 시설 부분위탁)으로, 탄천 및 서남 물재생센터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중인데, 이는 1997년 IMF사태 이후 공공부분에 대한 정부의 민간위탁 권장 및 구조조정 권고에 따른 것으로,

○ 서울시는 1999.11.30.일 탄천→서남→난지→중랑 순으로 직영 방식에서 민간위탁 방식으로의 전환계획 방침(「하수처리장 민간위탁용역 결과 및 추진계획 보고」, 하수67712-1544)을 수립하고, 2000.4.1.일 탄천을, 2001.8.1.일 서남을 각각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하였음.

○ 당시 현장에 근무하던 공무원들이 퇴직하면서 종업원지주제 형식의 (주)탄천환경 및 (주)서남환경을 설립하였고,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수탁기관 선정)에 근거하여 이들과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한 후 현재까지 3년 단위로 7차례에 걸쳐 재계약을 시행한 상태임.

○ 이후 2008.7월 다음 순위로 난지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4]하려 하였으나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들의 반발로 중단되고, 대신에 중랑 및 난지를 직영으로 운영하되 조직효율화 차원에서 인원을 일부 감축하는 한편, 분뇨 및 슬러지처리시설 일부에 대해서는 부분 민간위탁을 추진[5]하는 것으로 결정한바 있음.

○ 따라서, 현재까지 직영과 민간위탁이라는 이원화된 체계로 운영되

---

4) 「민간위탁 용역결과 및 시행계획 보고」, 시장방침 제358호, 2008.07.07.

5) 「중랑 및 난지 물재생센터 효율과 계획 수립」, 시장방침 제502호, 2008.09.12.

고 있으며, 서울시는 이러한 이원화된 운영체계가 물재생센터의 일관성 있는 운영, 중장기 하수처리 종합계획 수립 등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 중복인력 발생, 약품 등의 공동구매에 따른 예산절감 기회 상실 등에 따른 운영관리의 비효율성을 낳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음.

○ 또한, 직영 중인 중랑 및 난지의 경우 2020년까지 현원 중 총 68명의 퇴직이 예정되어 있으나 행정안전부 인사규정으로 현장 기술인력의 충원이 어려워 조만간 인력공백이 예상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서울시는 4개 물재생센터의 운영방식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하겠음.

○ 이에 서울시는 본 조례안을 통해 탄천 및 서남을 우선적으로 공단화 하고 이후 중랑과 난지를 공단에 편입함으로써 물재생센터의 운영을 종국적으로 공단체계로 일원화하려는 계획인 것으로 파악됨.

○ 참고로, 금회 공단화 대상인 탄천은 현 계약기간이 2018.1.1. ~ 2020.12.31.까지이며. 서남은 2019.7.1. ~ 2022.6.30.까지임.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추진현황

○ 서울시는 2016.12.7.일 물재생센터의 이원화된 운영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공단 설립 방침[6]을 수립한바 있음.

---

6) 「물재생센터 운영체계 개선 추진계획 보고」, 시장방침 제383호)

○ 2016.5월부터 9월까지 추진한 「물재생센터 운영체계 전환방안 연구」 용역[7] 결과에 따르면, 공단 방식이 직영 및 관리대행 방식에 비해 초기 운영 예산이 적게 소요되고, 전문기술 인력의 채용 및 운영성과 평가가 용이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음.(〔표 2〕 참조)

[표 3] 운영방식별 장·단점

구 분	장 점	단 점
직 영	- 직영센터 근무자가 가장 선호 - 고용의 안정성 보장	- 현 관리대행 직원(탄천, 서남)을 공무원으로 신분전환 불가 - 총액인건비제 및 공무원 정원 증가 한계로 일시에 대규모 인력(300여명) 채용 어려움 - 행자부 인사규정 상 관리운영직 소멸로 퇴직 시 일반직 직원으로 충원되어 전문성 저하
민 간 위 탁	- 민간기업 기술력 활용 - 결원 시 직원채용 유리 - 입찰 시 낙찰률에 따른 예산 절감 가능 환경부 물산업 육성 취지에 부합	- 1개의 수탁사가 관리하기에는 너무 방대한 조직(4개 센터 전체를 운영할 수탁사 없음) - 4개 센터를 분리하여 위탁 시 일원화 운영체계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 수탁사가 자주 변경될 경우 관리 운영 부실발생 우려 (현대화사업 진행, 처리장별 다양한 공법 존재 등)
지 방 공기업 (공 단)	- 대규모 조직을 관리하기에 적합 - 운영예산은 지방공기업이 가장 적게 소요(일반관리,이윤,부가세 등 절감) - 각 센터별 실험실을 통합기술연구소 형태로 발전시켜 운영 효율성 증대 - 하수처리시설 경영전반에 대한 평가로 운영성과에 대한 동기부여 가능 (행자부 경영평가) - 하수처리시설 유경험 전문가를 채용하여 경쟁 및 동기부여로 장기 근무 가능	- 초기 운영 예산은 가장 적으나 장기간 운영 시 예산 증가(직원 호봉 증가 등) - 공공조직의 비대화(공단 신설)에 대한 사회적 비판 우려

자료 : 물재생센터 운영체계 전환방안 연구, 2016,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7) 1. 용 역 명 : 물재생센터 운영체계 전환방안 연구
2. 용 역 사 :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대표 배성기)
3. 용역기간 : '16.5.9 ~ 9.26
4. 계약금액 : 35백만원
5. 과업내용
- 우리시 물재생센터 운영체계 분석
- 타 지자체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체계 및 현황 분석
- 일원화 운영체계 타당성 및 최적 운영체계 전환방안 검토

○ 이에 서울시는 2017.2월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와 공단 설립에 대해 협의하였고, 당시 행정자치부로부터 공단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및 주민공청회를 실시하고 2차 협의를 진행할 것을 회신받음에 따라,

○ 2017.2월부터 12월까지 「공단설립 타당성검토 연구」 용역[8]을 수행하여 공단 설립의 타당성을 검토(〔표 3〕 참조)하였으나 주민공청회가 일부 이해당사자의 반발로 무산되었으며,

[표 4] 공단설립 타당성검토 결과 요약

구 분	평 가 항 목		검 토 결 과
적 정 성	법적 적정성		·-검토대상 사업은 법규에 따라 공단 위탁이 가능함
	공공성	민간영역 침해	·- 시장성 테스트 결과, 하수처리시설은 공공성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민간영역을 침해한다고 판단되지 않음
		시민복리 증진	·- 시민 설문조사 결과 공공하수처리시설 서비스 개선 기대수준은 100점 만점에 66.8점, 복리증진 예상 기여수준은 60.2점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기대되는 효과로 '공공성 향상(35.0%)'을 꼽았음
		지역경제 기여	
		환경훼손 여부	- ·공단 운영에 따른 추가적인 환경훼손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정책적 필요성		·- 대안인 직영/공단위탁/민간위탁 중에서 공단방식이 정책적 실행가능성 측면에서 비교우위 지님
	기 업 성		- ·하수처리시설은 영업수지비율 50% 미만이여도 당연적용사업으로 공단 위탁이 가능함 ·- 경제성 분석 결과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행 대비 공단 방식이 더 높게 나타남
지역경제 기 여	예 산 절 감		·- 위탁센터 우선공단시 현행대비 평균 연간 약 10억 ~14억 비용절감 예상
주 민 복리증진	주민 설문조사		·- 응답자(818명)의 49.6%가 공단 설립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 그 중 46%가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함 (기여하지 않음 응답자 11.7%의 4배 수준)

8) 1. 용 역 명 : (가칭)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
2. 용 역 사 : 지방공기업평가원
3. 용역기간 : '17.3. ~ '17.12.
4. 계약금액 : 81백만원
5. 과업내용 : 공단설립에 따른 법률적, 제도적 타당성 분석, 사업 적정성 및 사업별 수지분석 등

○ 이후 2019.3~4월까지 중랑 및 난지 직원설명회 개최를 통해 이해당사자의 반발을 일부 해소하고 2019.10.23.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을 위한 주민공청회」 실시를 완료하였으며, 2020. 3.2.일 행정안전부의 공단 설립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함.

○ 따라서, 서울시는 우선 공감대가 형성된 탄천과 서남을 공단화 하기 위해 금회 2021.1월 설립을 목표로 공단 설립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이며,

○ 안 부칙을 통해 초기 설립을 위한 경비 약 16억 38백만원을 전액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현금 출자할 계획이고, 설립될 공단 산하에는 2개 본부, 4개 팀, 2개 사업소, 1개 연구소 등을 둘 계획인 것으로 파악됨.

[표 5]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조직도(1단계) 예시

《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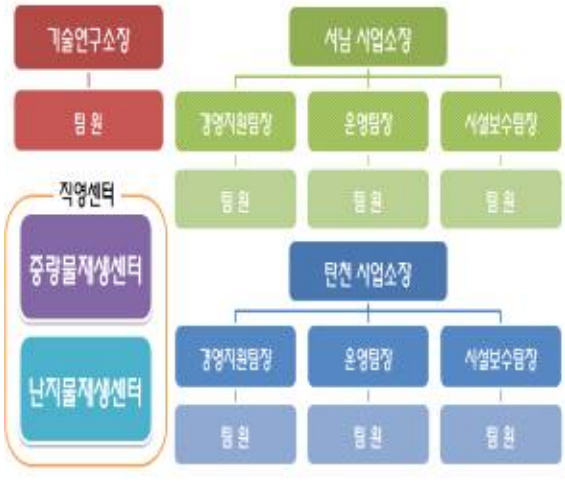

《사업소》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가. 제도적 측면

○ 먼저, 「하수도법」 제19조의2[9]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지방공단에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1항[10]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11]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12]는, 시장은 물재생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물재생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수도법령에 따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울시의 공단 설립을 통한 대행체계로

---

9) 「하수도법」 제19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생 략)
2.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자
② - ④ (생 략)

10) 「지방공기업법」 제76조(설립·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생 략)

11)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 5.
6. 하수도사업
7. - 9. (생 략)
② - ③ (생 략)

12)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물재생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하기 위하여 물재생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운영을 하수도법령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 능력이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의 전환은 법적인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임.

나. 공공성 측면

○ 하수처리는 그 특성상 이용자를 특정하여 배제할 수 없고, 다른 이용자가 추가된다고 하여도 다른 개인의 소비를 감소시키지 않는 다는 점에서 비배재성과 비경합성을 충족하는 대표적인 공공서비스임.

○ 또한, 하수처리 수질의 수준이 환경오염 및 시민보건·건강에 바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운영주체의 공적역할이 매우 중요하다할 것이므로, 현 민간위탁 방식이 수익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살펴볼 때 공익성에 주안점을 둔 공단 체계가 공공성 측면에서는 다소 유리하다 사료됨.

다. 경제성 측면

○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 결과[13]에 의하면(〔표 5〕 참조) 사회적 할인율 4.5%[14]를 적용하여 현행 이원화 운영체계와 공단 체계 간의 경제성을 비교분석한 결과,

○ 먼저, 재무적 측면에서 민간위탁 방식의 경우 수익성지수[15]가 0.6086인 반면, 공단 방식의 경우 0.6218로 재무적 타당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제시하고 있고,

---

13) (가칭)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2017.3.~2017.12.), 지방공기업평가원

14) 일반적으로 자국의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및 경제적 잠재능력 등을 감안해 보통 개발도상국의 경우 7~8% 이상, 선진국의 경우 보통 5~6% 수준을 적용하며, 본 분석에서는 국가의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적용되는 4.5% 적용

15) 수익성지수(Profitability Index, PI) : 투자한 금액 1원 당 회수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지수
수익성 지수(PI) = 미래에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의 현재가치 / 초기 투자금액의 현재가치

○ 수익 및 편익을 고려한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민간위탁 방식의 편익비용비[16]는 0.9512인 반면, 공단 방식의 경우 0.9559로 공단 방식이 상대적으로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제시하고 있음.

[표 6] 경제성 측면 분석 결과 종합 비교

(단위 : 천원)

구 분	재무적 타당성 분석 결과		차이(공단-현행)
	현 행	공 단	
수익성지수(PI)	0.6086	0.6218	0.0132
재무적 내부수익률(FIRR)	-	-	-
재무적 순현재가치(FNPV)	-677,092,238	-640,337,288	36,754,950
구 분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차이(공단-현행)
	현 행	공 단	
편익비용비율(B/C)	0.9412	0.9559	0.0147
내부수익률(IRR)	-	-	-
순현재가치(NPV)	-101,663,048	-75,137,441	26,525,607

○ 다만, 민간위탁의 경우 3년 단위로 공개경쟁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가격 경쟁에 따른 주기적인 예산절감 효과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공단 체계로의 전환시 가격 경쟁에 준하는 철저한 주기적 평가체계가 수반된다는 전제 하에 상대적인 경제성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짐.

○ 참고로, 서울시는 탄천과 서남을 공단화 할 경우 운영비용이 현행 대비 연간 평균 약 10억원의 비용절감을 예상하고 있음.(〔표 6〕 참조)

16) 편익비용비(Benefit-Cost Ratio) : 편익흐름의 현재가치의 총계를 비용흐름의 총계로 나눈 비율. 계산된 비율이 높을수록 사업효과가 크고 투자순위도 높은 것으로 평가됨.

[표 7] 운영방식간 비용 상세 비교 (단위: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현행(A)	부분 공단(B)	차이 (B-A)	현행(A)	부분 공단(B)	차이 (B-A)	현행(A)	부분 공단(B)	차이 (B-A)	현행(A)	부분 공단(B)	차이 (B-A)	현행(A)	부분 공단(B)	차이 (B-A)
합계	108,523	107,514	Δ1,009	110,522	109,504	Δ1,018	112,576	111,551	Δ1,025	114,687	113,655	Δ1,032	116,858	115,818	Δ1,040
본부	0	2,318	2,318	0	2,422	2,422	0	2,531	2,531	0	2,645	2,645	0	2,764	2,764
탄천	36,807	34,681	Δ2,126	37,564	35,355	Δ2,209	38,344	36,049	Δ2,295	39,148	36,763	Δ2,385	39,978	37,498	Δ2,479
서남	71,716	70,515	Δ1,201	72,958	71,727	Δ1,231	74,232	72,971	Δ1,261	75,539	74,247	Δ1,292	76,880	75,556	Δ1,324

■ 조례안에 대한 주요 조문별 검토의견

가. 총칙(안 제1조~제6조)

○ 안 제1조에서 안 제6조는 총칙으로,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제시하고, 안 제2조는 「지방공기업법」 제51조[17]에 따라 공단은 법인으로 하며, 안 제3조는 「지방공기업법」 제52조[18]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을 설립하고, 공단의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支社)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공단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자본금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며,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자본금에 관한 사항
10. 공단채 발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안 제4조는 「지방공기업법」 제53조[19]에 따라 서울시가 자본금은 전액 현물 또는 현금으로 출자함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6조는 「지방공기업법」 제57조[20]에 따라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5조는 「지방공기업법」 제56조[21]에 따라 공단의 정관에 기재하여야할 사항을 규정하고. 정관을 변경하고자할 경우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절차를 명시하고 있음.

17) 「지방공기업법」 제51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18) 「지방공기업법」 제52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19) 「지방공기업법」 제53조(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20) 「지방공기업법」 제57조(등기) ①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1) 「지방공기업법」 제56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자본금에 관한 사항
10. 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53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정관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③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여기서, 정관 변경 시 절차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설립·운영 중인 서울시설공단[22], 서울연구원[23], 서울기술연구원[24] 등의 경우 운영·관리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의회의 견제·감시권한을 강화하고자 시장이 정관의 변경을 인가 또는 승인하기 전에 시의회 보고 절차를 조례에서 의무화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제정안의 경우도 공단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사전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3조(정보공개의 원칙)에도 부합된다 할 것임.(〔표 7〕참고)

[표 8] 수정안 조문대비표(안 제5조제2항)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정관) ① 생 략	제5조(정관) ① (제정안과 같음)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임원 및 직원(안 제7조~제17조)

○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는「지방공기업법」제58조[25], 제59

22)「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정관) ① (생 략)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3)「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설립) ① - ③ (생 략)
④ 연구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4)「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제5조(정관) ① (생 략)
② 연구원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5)「지방공기업법」제58조(임원의 임면 등)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조[26]에 따라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 및 감사 등에 대한 임원의 구성 및 임기, 직무를 규정하였고, 안 11조는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 안 제12조는 「지방공기업법」 제61조[27]에 따라 임직원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안 제13조는 「지방공기업법」 제62조[28]에 따라 공단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음.

제7조(임원)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③ 임면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이사장의 연임 및 해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 ③ (생 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에 해임하거나 임기가 끝나더라도 연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장을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다.
1. - 2. (생 략)
⑥ - ⑧ (생 략)

26) 「지방공기업법」 제59조(임기 및 직무) ①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는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③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27) 「지방공기업법」 제6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①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 없이,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常勤)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28) 「지방공기업법」 제62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항 및 제5항에 따른다.

제8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9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고,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2분의 1미만으로 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공단의 업무감독을 담당하는 시의 실·본부·국장과 세무 또는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으로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상임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고,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라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비상임이사는 공단의 사업과 직접 관계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13조(이사회)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 동안 의장이 된다.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지정하는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이사회 의사록은 개인정보 및 경영상의 기밀 등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⑧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①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단을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15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이사회의 참여 제한)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7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 사업(안 제18조~제19조)

○ 안 제18조 및 제19조는 공단의 자체사업 및 대행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18조(자체사업) 공단은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본금 범위에서 자체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19조(대행사업) ①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계약에 따른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단은 대행사업에 대한 비용부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대행사업비의 원가를 산출할 수 있다.

○ 안 제19조는 공단이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로부터 사업을 대행할 경우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공단은 시장의 대행기관으로써 공단이 새로운 위탁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단 설립목적에 부합하는지를 의회 입장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고 또한, 시 세입·세출 예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시장의 승인을 득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득하는 절차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이는 현행 「서울시설공단조례」 제19조[29]에서 신규 대행사업에 대한 의회 사전의결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며 따라서, 이를 준용하여 〔표 8〕과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음.

[표 9] 수정안 조문대비표(안 제19조)

제 정 안	수 정 안
제19조(대행사업) ① 생 략	제19조(대행사업) ① (제정안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1. 다른 조례에서 "위탁한다"고 규정한 경우 2. 이미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업영역에서의 추가사업인 경우. 다만, 추가사업이 구조물을 수반할 경우에는 동일부지 내 또는 인접한 부지 내에서의 사업에 한함 3.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체결된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

29) 「서울시설공단조례」 제19조(대행사업) ① (생 략)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1. 다른 조례에서 "위탁한다"고 규정한 경우
2. 이미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업영역에서의 추가사업인 경우. 다만, 추가사업이 구조물을 수반할 경우에는 동일부지 내 또는 인접한 부지 내에서의 사업에 한함
3.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체결된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하는 경우에도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미 시의회의 승인을 얻은 사업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와 청소·경비·일상적 시설관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 ⑦ (생 략)

제 정 안	수 정 안
여는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여는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단은 대행사업에 대한 비용부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대행사업비의 원가를 산출할 수 있다.	⑥ 공단은 대행사업에 대한 비용부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대행사업비의 원가를 산출할 수 있다.

라. 재무회계(안 제20조 ~ 제26조)

○ 안 제20조부터 제26조는 재무회계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공단의 사업연도는 「지방공기업법」 제64조[30]에 근거하여 서울시 일반회계 회계연도를 따르고, 「지방공기업법」 제62조의2[31]에 의거 회계거래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토록 하고 있으며,

○ 공단의 예산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32]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고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하도록 하면서 예산 성립 및 변경 시 시장 보고와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 승인을 득하도록 하고 있음.

30) 「지방공기업법」 제64조(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31)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회계처리의 원칙 등) ① 공사는 경영 성과 및 재무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② - ⑥ (생 략)

32) 「지방공기업법」 제65조(예산) ① 공사의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성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공사의 사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21조(회계처리의 원칙) ① 공단은 경영 성과 및 재무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② 공단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제22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법 제66조의2에 따른 예산에 관한 공통지침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3조(결산)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에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자본잉여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시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납입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자 할 때에는 결손의 내역과 이유를 시장을 경유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매 사업연도에 결손이 생긴 때에는 다음연도에 이월한다.

제25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영 63조제2항에 따른 비용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 또는 평균 공급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급부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평균 공급 가격과 실제 공급 가격의 차액
2. 그 밖의 성질상 공단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경비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 부담에 관하여 공단은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6조(자금 차입) ①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의 지출에 필요한 현금이 부족하여 일시 차입을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차입 한도를 공단의 매 회계연도 예산으로 정하고, 차입한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 안 제24조는 손익금의 처리를 규정한 것으로, 공단의 잉여금으로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을 경유하여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는데, 안 제5조제2항의 수정안이 검토될 경우 약어 규정에 따라 안 제24조제2항도 연계하여 〔표 9〕와 같이 수정될 필요가 있음.

[표 10] 수정안 조문대비표(안 제24조)

제 정 안	수 정 안
제24조(손익금의 처리) ① 생 략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자 할 때에는 결손의 내역과 이유를 시장을 경유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24조(손익금의 처리) ① 생 략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자 할 때에는 결손의 내역과 이유를 시장을 경유하여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생 략

마. 감독 및 보칙(안 제27조 ~ 제31조)

○ 안 제27조에서 제31조는 공단에 대한 시장의 관리·감독 사항과 시장이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을 공단에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27조(감독) ① 시장은 공단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단은 시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공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공단에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29조(공무원의 파견·겸임) ① 시장은 이사장의 요청이 있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경력 및 근무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다.
제29조(공무원의 파견·겸임) ① 시장은 이사장의 요청이 있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업무상황 공표) ①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 상·하반기 각각 1회씩 시장이 지정하는 공단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시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영 제4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31조(공인의 비치) 공단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서울특별시 공인 조례」에 따라 공인을 비치·사용할 수 있다.

○ 안 제29조는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이사

장의 요청이 있을 때 공단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지방공기업법」 제75조의3[33],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34]에 따라 시장으로 하여금 공단 업무를 확인·감사하게 함으로써 운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바람직하다 하겠음.

■ 맺음말

○ 1997년 IMF사태 이후 공공부분에 대한 정부의 민간위탁 권장 및 구조조정 권고에 기인하여 2000년 4월과 2001년 8월 각각 탄천과 서남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 지금까지 약 20년간 서울시 물재생센터는 직영 방식(중랑, 난지)과 민간위탁 방식(탄천, 서남)의 이원화된 체계로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그동안 운영의 비효율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임.

○ 즉, 컨트롤타워 역할 부재, 경영효율성 저하, 지속적인 민간위탁 재계약으로 인한 공정성 문제, 센터별 물품구매로 인한 각종 구매비용 증가 등의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뿐만 아니라, 최근

33) 「지방공기업법」 제75조의3(공무원의 파견·겸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공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34)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파견근무) ①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포함한다), 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들어 관리운영직 고령화로 인한 인력충원 문제 및 전문성 부재 등도 새로운 문제로 등장하고 있음.

○ 이에 서울시는 그동안 관련 연구용역과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탄천과 서남을 우선적으로 공단체계로 통합하고, 차후 직영인 중랑과 난지를 편입시킴으로써 공단체계로의 완전한 통합을 이루기 위해,

○ 금회 본 조례안을 제출한 것으로, 지금의 이원화 체계를 일원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 다만, 일원화하는 방식 측면에서 살펴보면, 본 조례안의 공단체계뿐만 아니라 하나의 직영체계와 하나의 민간위탁체계 등도 함께 고려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 서울시가 그동안 검토한 결과들의 객관성, 물재생시설의 공공성, 시기의 적정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미래지향적 측면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결정할 사안이라 여겨짐.

〔붙임〕 1. 국내 5대 광역시 공단체계 운영 현황

〔붙임 1〕 국내 5대 광역시 공단체계 운영 현황

❖ **국내 5대 광역시 공단 운영**

- 전국적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방식은 민간위탁이 일반적이지만, 국내 5대 광역시는 공공하수처리 시설 운영관리를 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음

부산환경공단 (총인원 646명)	설립일자	2000.01.05
	자 본 금	-
	하수처리장	14개소
	조 직	1이사장,2상임이사,1실,3본부,4처,18사업소,10팀
	인 원	임원3,일반정규직488,상용정규직51,비정규직119
	사업범위	**·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관리운영** · 쓰레기소각장 · 매립장 등 청소시설 관리운영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의 환경시설 위탁사업
대구환경공단 (총인원481명)	설립일자	2000.07.01.
	자 본 금	2.000백만원
	하수처리장	8개소
	조 직	1이사장,1상임이사,1실,3처,7사업소,29파트
	인 원	임원2,일반정규직370명,상용정규직60명,비정규직44명,소속외6명
	사업범위	**· 하수종말처리장,** 위생처리장 관리 · 운영사업 · 쓰레기소각장, 재활용사업장 등 청소시설 관리 · 운영사업 · 음식물쓰레기하수병합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 운영사업 **· 하수슬러지 처리를 위한 고화처리장 관리 · 운영사업**
인천환경공단 (총인원493명)	설립일자	2007.01.19
	자 본 금	300백만원
	하수처리장	21개소
	조 직	1이사장,2상임이사,1실,2본부,6부,8사업소,21팀,3지소
	인 원	임원3,일반정규직416,상용정규직20,비정규직46
	사업범위	**· 하수종말처리장,** 위생처리장, 폐기물소각시설, 음식물 자원화 시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 운영사업

		· 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등 환경관리 시설 관리 · 운영사업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사 · 공단 등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환경관련 산업 · 기타 시장이 필요하여 위탁하는 사업, 상시 시설의 부대사업
광주환경공단 (총인원374명)	설립일자	2002.10.31
	자 본 금	500백만원
	하수처리장	3개소
	조 직	1이사장,1상임이사,1실,1부,5사업소,18팀
	인 원	임원2명,일반정규직251명,상용정규직36명,비정규직94명
	사업범위	**· 제1,2효천하수처리장 및 슬러지처리시설 운영** · 상무소각장 및 광역위생매립장 운영 · 음식물자원화시설(동곡, 유덕)운영 · 위생처리장 운영, 광주천 및 영산강 준공시설물 관리 등 · 기타 시장이 필요하여 위탁하는 사립 · 기타 시장이 필요하여 위탁하는 사업, 상시 시설의 부대사업
대전시설관리공단 (총인원713명)	설립일자	2001.01.01
	자 본 금	1,500백만원
	하수처리장	3개소
	조 직	1이사장,2상임이사,1실,1처,4본부,19팀,2센터,2관
	인 원	임원3명,일반정규직247명,상용정규직208명,비정규직214명,소속외인력44명
	사업범위	**· 하수처리장,** 위생처리장 등 환경시설 운영 · 장사시설 및 체육시설 관리운영 · 무지개복지센터 등 복지시설 관리운영 · 시민자전거 타슈 및 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 ·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7대 특·광역시 중 울산은 '22년을 설립 목표로 현재 공단 설립 추진 중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질의) 공단 설립 시 기존에 탄천·서남 물재생센터에서 근무 중인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 방안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김평남, 전석기, 문장길, 홍성룡, 박순규 위원)

답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보수체계 및 조직설계안 마련 용역'을 2020.4월~7월까지 수행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음.(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

○ 질의) 현재 민간위탁 중인 탄천·서남 물재생센터를 우선 공단화하고 추후에 직영 운영 중인 중랑·난지 물재생센터를 공단화할 예정인데, 이 경우 운영체계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는 그대로 남는 것이 아닌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박기열 위원)

답변) 탄천·서남 물재생센터를 우선 공단화하여 운영하고, 공단 방식과 직영 방식 간에 경영성과 비교분석을 통해 직영 운영 중인 물재생센터의 공단화 추진 당위성을 확보하여 빠른 시일 내에 공단으로 일원화될 수 있도록 하겠음.(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해당없음

6. 수정안 요지 :

○ 시장이 공단의 정관 변경을 인가할 경우 공단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사전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함.

○ 공단이 새로운 대행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얻기 전에 시의회 사전의결제도를 둠으로써 대행사업이 공단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8.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438

제안년월일 : 2020년 4월 23일
제 안 자 : 도시안전건설위원장

1. 수정이유

○ 시장이 공단의 정관 변경을 인가할 경우 공단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사전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 공단이 새로운 대행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얻기 전에 시의회 사전의결제도를 둠으로써 대행사업이 공단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주요 골자

○ 시장이 공단의 정관 변경을 인가할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 공단이 새로운 위탁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이를 해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하는 경우에도 시의회 의결을 받도록 함.(안 제19조제2항, 제19제3항)

○ 약어규정을 적용하여 “서울특별시의회”를 “시의회”로 변경함.
(안 제24조제2항)

3. 참고사항 : 생 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안 제19조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하는 경우에도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미 시의회의 승인을 얻은 사업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와 청소·경비·일상적 시설관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 19조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면서 본문 중 “제1항 및 제2항에”를 “제1항 및 제4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한다.

안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1. 다른 조례에서 "위탁한다"고 규정한 경우

2. 이미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업영역에서의 추가사업인 경우. 다만, 추가사업이 구조물을 수반할 경우에는 동일부지 내 또는 인접한 부지 내에서의 사업에 한함

3.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체결된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안 제24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의회에”를 “시의회에”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표] 수정안 조문대비표(안 제5조제2항, 안 제19조, 안 제24조제2항)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정관) ① (생 략)	제5조(정관) ① (제정안과 같음)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대행사업) ① (생 략)	제19조(대행사업) ① (제정안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1. 다른 조례에서 "위탁한다"고 규정한 경우 2. 이미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업영역에서의 추가사업인 경우. 다만, 추가사업이 구조물을 수반할 경우에는 동일부지내 또는 인접한 부지 내에서의 사업에 한함 3.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체결된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제 정 안	수 정 안
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하는 경우에도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미 시의회의 승인을 얻은 사업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와 청소·경비·일상적 시설관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
④ 공단은 대행사업에 대한 비용부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대행사업비의 원가를 산출할 수 있다.	⑥ ------(제정안과 같음)------.
제24조(손익금의 처리) ① (생 략)	제24조(손익금의 처리)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자 할 때에는 결손의 내역과 이유를 시장을 경유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 시의회에 ----------.
③ (생 략)	③ (제정안과 같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을 설립하고, 공단의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支社)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공단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자본금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며,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자본금에 관한 사항
10. 공단채 발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7조(임원)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③ 임면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이사장의 연임 및 해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다.

제8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9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고,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2분의 1미만으로 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공단의 업무감독을 담당하는 시의 실·본부·국장과 세무 또는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으로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상임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고,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라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비상임이사는 공단의 사업과 직접 관계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13조(이사회)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이사회 구성 시 특정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 동안 의장이 된다.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지정하는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이사회 의사록은 개인정보 및 경영상의 기밀 등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⑧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①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단을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15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이사회의 참여 제한)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7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3장 사업

제18조(자체사업) 공단은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본금 범위에서 자체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19조(대행사업) ①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계약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1. 다른 조례에서 "위탁한다"고 규정한 경우
2. 이미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업영역에서의 추가사업인 경우. 다만, 추가사업이 구조물을 수반할 경우에는 동일부지 내 또는 인접한 부지 내에서의 사업에 한함
3.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체결된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하는 경우에도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미 시의회의 승인을 얻은 사업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와 청소·경비·일상적 시설관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공단은 대행사업에 대한 비용부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대행사업비의 원가를 산출할 수 있다.

제4장 재무회계

제20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21조(회계처리의 원칙) ① 공단은 경영 성과 및 재무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② 공단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제22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법 제66조의2에 따른 예산에 관한 공통지침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3조(결산)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에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자본잉여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시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납입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자 할 때에는 결손의 내역과 이유를 시장을 경유하여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매 사업연도에 결손이 생긴 때에는 다음연도에 이월한다.

제25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영 63조제2항에 따른 비용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 또는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급부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평균 공급 가격과 실제 공급 가격의 차액
2. 그 밖의 성질상 공단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경비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 부담에 관하여 공단은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6조(자금 차입) ①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의 지출에 필요한 현금이 부족하여 일시 차입을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차입 한도를 공단의 매 회계연도 예산으로 정하고, 차입한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5장 감독

제27조(감독) ① 시장은 공단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단은 시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공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공단에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9조(공무원의 파견·겸임) ① 시장은 이사장의 요청이 있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경력 및 근무평정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른다.

제30조(업무상황 공표) ①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 상·하반기 각각 1회씩 시장이 지정하는 공단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시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영 제4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31조(공인의 비치) 공단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서울특별시 공인 조례」에 따라 공인을 비치·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단의 설립등기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단설립 경비) 이 조례에 따라 공단이 설립등기될 때까지 공단의 설립에 필요한 경비는 시의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지출한다.

제3조(최초로 구성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 공단의 임원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최초로 구성하는 임원추천위원회는 공단의 설립등기 전까지는 시에 둔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주)서남환경, (주)탄천환경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인과 체결한 각종 협정, 협약, 계약 등은 공단의 설립등기일에 공단에 승계된 것으로 본다.